##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된 형사재판심리제도의 반동성

천 세 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50권 198폐지)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은 인민들에 대한 봉건지배계급의 정치적지배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형사재판절차를 규정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형사재판절차는 전형적인 규문소송절차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범죄의 적발과 심리를 왕의 권력기관이 일방적으로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에서 형사재판심리는 사건관계자들의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심리자의 일방적의사에 따라 진행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은 규문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자를 조사, 적발, 확정하고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된 형사재판심리제도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형사재판심리권을 국왕의 수중에 집중시켜 전제정치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 각급 고을들을 정비하여 여기에 소속시켰으며 고을과 도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왕의 심복들로 빠짐없이 배치하고 그들에게 재판권을 주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모든 재판에 대한 통제권은 왕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왕은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한 독단적인 심리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의금부라는 왕의 전용재판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왕의 형사재판심리 권을 직접 보좌하게 하였으며 사헌부와 사간원에 범죄의 조사제기권을 부여하여 왕의 사 법권을 간접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제정치에 맞는 재판기 관체계가 완성되게 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왕은 전제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심리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였다.

물론 왕이 혼자서 전국의 모든 형사사건을 다 심리한것은 아니였다. 왕이 관여하여야 할 형사사건의 심리에 그가 직접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왕의 동의를 얻어 해 당 사건관할관청들 또는 왕이 지명하는 관청들이 심리하였으며 국왕은 그에 기초하여 판 결하였다.

왕의 지시에 따라 형조, 한성부, 사헌부가 함께 심문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삼성추국》이라고 하였다. 대체로 중요강상죄를 형조, 한성부, 사헌부의 세 관청이 모여 심문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심리를 심리기관자체의 결심에 따라 할수 있는 조건들도 규정하였으나 그것은 형사재판심리에 대한 왕의 간섭을 배제한것은 아니였다.

실제적으로 조선봉건왕조가 가장 엄중한 범죄로 본 왕권침해나 국가반역과 같은 범죄와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강상죄 그리고 일반범죄라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재판심리권은 왕에게 전속된것이였다.

모반대역죄, 강상죄, 살인죄를 비롯한 봉건국가가 중시한 범죄의 범죄자에 대한 심리권이 왕에게만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왕이 심리한것은 아니였다. 왕이직접 심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각급 재판기관들과 특별재판기관들에 위임하여심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판결을 왕이 하였다.

국가반역이나 왕권침해와 같은 가장 엄중한 범죄나 고위벼슬아치들에 관한 사건은 왕이 직접 다루기도 하였다. 그후 점차 왕의 전제권이 확대강화되면서 봉건관리들의 범죄에 대하여 왕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할 범위는 계속 넓게 정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15세기말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하면 3품이하의 관리들에 대하여서도 모두 심문한 후 법조문을 적용하여 임금의 결제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봉건관리들의 범죄는 다 임금의 승인을 얻어야 죄를 처결할수 있게 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형조에서 관할내 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또 는 각 도에서 올라오는 문건을 심리하여 왕의 판결에 넘겨야 하였다.

조선봉건왕조가 모반대역죄와 강상죄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왕이 직접 심리하도록 한것은 각급 재판기관들의 자의를 막고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된 형사재판심리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형사재판심리를 맡은 기관들을 대폭 늘이고 각급 행정관들에게 심리권을 주어 인민들에 대한 봉건통치배 들의 형사란압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왕을 보좌하는 특별재판기관들과 중앙과 지방의 재판기관들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형사재판심리체계를 세우고 봉건지주계급의 리익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행 위에 이르기까지 《범죄》로 몰아 무자비하게 징벌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형사재판심리에 참여하는 관청들을 다른 부분의 관청들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조직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80개의 중앙관청들중 의금부,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 승정원, 형조, 한성부 등을 비롯한 10여개가 형사재판심리에 관여하는 관청들이였다. 이 관청들은 조선 봉건왕조의 3품이상의 33개 관청들중에 속하는 높은 급의 관청들이였다. 봉건국가의 2품이상의 관청 13개중에 5개가 형사재판심리에 관여하는 관청이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중앙의 부문별행정의 최고관청들중에서 중앙재판심리기관인 형조에 호조다음가는 벼슬과 인원을 두었다.

조선봉건왕조는 리조에 7명, 호조에 16명, 례조에 9명, 병조에 12명, 공조에 9명, 형조에 12명을 두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조선봉건왕조가 인민수탈기관인 호조와 군사행정 및 군사재판기관인 병조와 함께 중앙재판기관인 형조를 특별히 강화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형사재판심리에 참가하는 많은 관청들의 특성에 따라 재판심리범위를 명백히 정하여놓았다.

각급 재판심리기관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심리관할은 규정되였지만 실지 이 심리기관들이 직접 심리해야 할 대상은 얼마 되지 않았다. 각급 고을원들은 태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직접 심리하며 의금

부, 사헌부를 비롯한 특별재판기관들과 형조를 비롯한 중앙재판기관들은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다 심리하게 되여있었다.

결국 조선봉건왕조의 형사재판심리제도에서 각급 심리기관들의 기본임무는 봉건적인 억압과 수탈에 항거하는 인민들에게 무자비한 형사징벌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봉건적압제 를 반대하여나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데 있었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된 형사재판심리제도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피소자의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규정하여 고문을 합법화하고 신분적차별에 기초하여 증언의 가치를 규 정함으로써 봉건통치계급의 특권과 그의 계급적지배,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합리 화하기 위한 수단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소추기관이나 피고인이 없었으며 다만 사건을 조사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소와 그 조사심리의 대상만이 있었다. 그리고 사건조사단계와 재판단계의 구분이 없었으며 형사소송의 시작과 수사, 예심, 재판 이 하나의 기관에 의한 련속과정으로 되여있었다. 조사, 심리에서는 변론주의가 없고 심 문에 고문이 동반되었으며 수속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서면주의에 기초하고있었다.

조선봉건왕조는 형사재판심리를 위한 구금에서 계급신분적차별을 합법화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대한 심리는 일반적으로 태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죄인을 《옥》에 가두어놓고 진행하게 되여있었다.

장형죄이상의 범죄자는 구금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죄》를 범한 노비나 량인에 대해서는 직접 구금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문무관리, 내시(내시부의 관원을 통털어 이르는말), 관리집안의 부녀, 중은 왕의 승인을 받아야 구금할수 있었다. 문무관리, 내시 등 량반사대부들이 범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먼저 가두어놓고 후에 왕의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 중이 범한 살인죄, 절도죄, 간음죄(간통죄), 상해죄의 경우에도 먼저가두어놓고 임금의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일부 구금대상자들은 볼모(인질)를 세우고 《옥》에서 나올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사이나 형제사이에는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위하여 대신 구금될수 있었으며 부녀의 범죄에 대해서는 남편(남편이 없을 때에는 아들)을 구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전대신 노비를 구금할수 있었다. 결국 《옥》에 감금되여 고통을 당하는것은 노비나 량인들이였다.

조선봉건왕조는 형사재판심리에서 고문과 계급신분적차별을 합법화하였다.

고문의 기본방법은 범죄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또는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장으로 볼기 또는 허벅다리를 때리는것이였다. 신장은 광대싸리로 만들며 중죄를 범하고 자백하지 않는자들에게 적용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조선봉건왕조형률은 신장의 종류와 규격 그리고 적용방법과 적용대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장에는 일반신장, 추국신장, 3성신장이 있었는데 규격과 사용용도가 서로 달랐으며 형장을 치는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여러차례에 걸쳐 보충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봉건국가가 중시한 범죄의 범죄자에 대한 고문에는 신장 외에도 압슬형, 원장형, 락형, 전도주뢰형 등 여러가지 고문방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문방법들은 다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에 항거하여 일떠선 노비, 농민

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투쟁을 진압징벌하기 위하여 고안해낸것이였다.

당시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한 고문방법자체가 가혹한데다가 봉건관료배들의 람형이 계속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게 되였다.

형사재판심리에서의 계급신분적차별은 범죄자에 대한 심문방법의 하나인 《공함추문》 제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공함추문》 제도는 물론 특권량반통치배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때문에 노비, 량인과 같은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대상에 속할수 없었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은 고문의 가혹성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조문들도 규제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형률에 람형행위를 규정하여놓기는 하였지만 실무에서는 람형이 의 연히 계속되고있었으며 그렇다고 하여 람형을 한 관리를 법조문대로 처결한 경우는 사실 상 없었다. 조선봉건왕조의 력사기록들에는 죄인을 매일 고문하여 형틀우에서 숨지게 한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으로 하여 해당 관리에게 우에서 지적한것과 같은 형벌을 적용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경국대전》의 《형전》을 비롯한 조선봉건왕조형률에 람형항목을 설정하고 람형 한 관리를 처벌하도록 한것은 명색상으로나마 형벌의 《공정성》을 설교하여 람형을 반대 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왕과 왕비, 왕자의 생일,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큰 제사날, 매달 초하루, 보름, 상현(7일 또는 8일), 하현(22일 또는 23일) 등과 같은 날에는 고문할 수 없게 되였다. 이외에 지방에서는 매해 춘분날부터 추분날까지에는 모반대역, 강도, 강간, 살인 등 봉건지배계급에게 엄중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외에는 다루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봉건통치배들의 탄압행위가 마치도 《하늘》의 의사와 그 무슨 인연이 있는듯이 설교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봉건통치배들의 고문을 숙명적인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자는것이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제된 형사재판심리제도는 봉건왕과 지주계급의 특 권과 리익을 옹호한 반면에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한 반동적인 제도였다.